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4. 11 선고 2016가합563104 판결 [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피고1. 주식회사 A

2. B

3. C

변론 종결2017. 3. 28.

판결 선고2017. 4. 11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A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4,975,365원 및 그중 288,694,565원에 대하여는 2016. 9. 20.부터, 200,838,814원에 대하여는 2016. 10. 18.부터 각 2016. 12. 9.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4. 6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피고 C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은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)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주식회사 A, B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나. 피고 C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재판장판사김범준

판사강민정

판사김현성

별지